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5755
----------	------

제출연월일 : 2020.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정이유

지역의 생활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센터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나. 센터 내 주요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 다. 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9조)
- 라. 센터 운영일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6조)
- 마. 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붙임)
-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안 반영(예정)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7. 10. ~ 7. 30.(20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1건

- 안 제6조제1항(위원회의 구성)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성별로 고른 의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에 대한 문구 추가를 검토 요청 ⇨ (조치내용) '성별을 고려하여' 문구를 추가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2건

- 안 제11조(시설의 이용)상 불명확한 규정(사전에, 알려야한다, 주기별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이 자의적 권한 행사 우려가 있어 구체적 내용(00일 이내, 00회 이내 등)으로 검토 요청
⇨ (조치내용) 향후 이용자와 운영자가 공감할 수 있는 규정(동 조례 제17조 제4항)을 제정하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사전공지·운영 예정
- 안 제13조(이용료) 및 별표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이용료와 관련해 냉난방 미사용시 요금부과의 적정성 검토 요청
⇨ (조치내용) 별표 제2호 냉·난방 비고란에 “냉난방 필요시 별도 신청 등” 내용 추가

6) 비용추계서 :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 153(만촌동)에 둔다.

제3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연장 및 전시실
2. 동호회 연습실 및 문화 창작 공간
3. 교육장 및 주민교류 공간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주요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 동호회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
2. 생활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행사
3.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4. 구·군 생활문화센터와 연계 및 거점 사업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생활문화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 지역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생활문화동호회 대표 등 지역 주민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전 내용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추석 명절 연휴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센터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날

제11조(시설의 이용)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활문화동호인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사전에 시설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시설 이용 준수사항, 이용료,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되,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별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시설 이용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결정 시 변경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영리적 목적의 행사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이용자가 이용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5. 제1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이용료) ① 생활문화센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육성을 위해 교육 사업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징수 범위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
2. 국가, 시 또는 수탁자가 후원하는 행사: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액

제15조(이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의 전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반환한다.

1.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 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80% 반환
3.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50% 반환
4.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전액 미반환

제16조(이용자 의무)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이용료(제13조 관련)

1. 시 설

시 설 명	이용기준	이용료(원)	비 고
공 연 장	3시간	50,000	추가 1시간 당 15,000원
대전시설	1일	50,000	5일 이상 대관 시 1일 30,000원
소전시설	1일	20,000	
다목적홀	3시간	20,000	추가 1시간 당 10,000원
교 육 장	3시간	20,000	추가 1시간 당 10,000원
연 습 실	3시간	10,000	추가 1시간 당 5,000원

2. 냉·난방

시 설 명	이용기준	이용료(원)	비 고
공 연 장	1시간	5,000	○ 시설이용자 중 냉난방 필요 시 별도 신청 ○ 냉방은 7~9월, 난방은 1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급변 시 시기 조정 가능
대전시설	1시간	5,000	
	1일	20,000	
소전시설	1시간	3,000	
	1일	10,000	

관 계 법 령

□ 지역문화진흥법

-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0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대구광역시 및 구·군이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시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 조성기간 : '19. 6. ~ '21. 5.
- 규모 : (연면적) 3,249.10m², (층수) 지하1층 ~ 지상3층
- 주요시설 : 공연장, 전시실, 동호회연습실, 교육장 및 창작·교류 공간 등
- 주요사업
 - 생활문화 동호회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
 - 생활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행사
 -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구·군 생활문화센터와 연계 및 거점 사업

2. 비용 발생 요인

-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경비(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초기 자산취득비)

3. 관련조문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생활문화센터 준공 : '21. 5월

- 개관 준비 : '21. 5. ~ 8월
- 개관 및 운영 : '21. 9월 ~
 - 센터 운영 조직 및 인력 (2팀 7명)
 - 센터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목적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나. 추계 결과

- 2021년 ~ 2025년(5년) 전체사업비 5,595백만원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정책과장 이 상 민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2,355,000	895,000	925,000	945,000	975,000	6,095,000
대관료	14,000	50,000	55,000	60,000	65,000	244,000
교육비	16,000	50,000	60,000	65,000	65,000	256,000
시비	2,325,000	795,000	810,000	820,000	845,000	5,595,000
세출	2,355,000	895,000	925,000	945,000	975,000	6,095,000
시설비	1,500,000	-	-	-	-	1,500,000
인건비	240,000	380,000	400,000	420,000	440,000	1,880,000
운영비	235,000	365,000	365,000	365,000	365,000	1,695,000
사업비	80,000	150,000	160,000	160,000	170,000	720,000
자산취득비	300,000	-	-	-	-	300,000
재원 조달	2,325,000	795,000	810,000	820,000	845,000	5,595,000
자체수입						
지방세	2,325,000	795,000	810,000	820,000	845,000	5,595,000